「강남구립 압구정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11. 26.

의안 번호	648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6. 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

나. 상정의결

-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1. 26.)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생활국장 : 이용달)

가. 제안이유

○ 관내 노인복지시설 중 압구정노인복지관 운영법인과의 협약기간 만료(2026. 4. 30.)에 따라, 압구정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함.

○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강남구립 압구정노인복지관 관리·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 노인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의 요구

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의 특성과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대응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실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이 적합함.

· 운영·관리상의 효율성 제고

직영보다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인력·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사업수혜자 특성,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른 목표 설정과 객관적인 실적평가 및 지도·점검을 통해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

○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압구정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일체

- 노인복지관 6대 사업

*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건강생활지원, 노년사회화교육,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 기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 위탁시설 개요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시설배치
압구정노인복지관	도산대로53길5	지하1층~지상4층 (792.92㎡)	프로그램실, 상담실, 식당, 사무실

- 인력현황 : 12명(정규직 7명, 계약직 5명)

- 이용대상 : 관내 60세이상 어르신(월 5,000명)

○ 민간위탁기간 : 5년 (2026. 5. 1. ~ 2031. 4. 30.)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관 선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원가계산서)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산 출 근 거
지출원가	①인건비(노무비)	기 본 급		276,696,000	46.8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7] - 2025년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제수당	연장근무수당	26,990,820	4.6	
			야간근로수당	0	0	
			휴일근로수당	0	0	
			연차수당	0	0	
			명절휴가비	27,669,600	4.7	
			가족수당	4,200,000	0.7	
			정액급식비	10,920,000	1.8	
			관리자수당	2,400,000	0.4	
		상여금		0	0	-
		기타후생경비		2,500,000	0.4	- 2025년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퇴직충당금		29,073,050	4.9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12,149,530	2.1	
			국민연금보험료	16,052,930	2.7	
			고용보험료	5,238,320	0.9	
			산재보험료	2,433,290	0.4	
			장기요양보험	1,573,360	0.3	
		소 계		417,896,900	70.7	
	②운영비(경비)	여비(국내/국외)		1,440,000	0.2	- 2025년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교 육 훈 련 비		2,800,000	0.5	- 직접 소요비용 계상
		임 차 료		0	0	-
		우 편 통 신 비		1,772,000	0.3	- 직접 소요비용 계상
		유 인 물 비		0	0	-
		소 모 품 비		8,779,690	1.5	- 직접 소요비용 계상
		수 선 유 지 비		12,726,000	2.2	- 직접 소요비용 계상
		차 량 유 지 비		592,480	0.1	- 직접 소요비용 계상
		공공요금 및 제세		29,745,730	5.0	- 직접 소요비용 계상
		기 타 경 비		42,386,100	7.2	- 운영에 필요한 기타 비용
		소 계		100,242,000	17	
	③ 사 업 비			72,932,000	12.3	
지출원가 합계(Ⓐ=①+②+③)				591,070,900	100	
수입원가	④ 입장료 · 이용료			0	0	-
	⑤ 사용료			0	0	- 노인복지법 제54조에 의거 무상사용
	⑥ 기타수입			69,840,000	100	- 경로식당 식권판매 수익
수입원가 합계(Ⓑ=④+⑤+⑥)				69,840,000	100	
위탁비용(Ⓐ-Ⓑ)				521,230,900	100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다. 참고사항(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Ⅰ. 동의안 제출 배경

○ 본 동의안은 2026. 4. 30.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강남구립 압구정노인복지관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사전에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본 건 동의안은 형식면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의회 제출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관련 조례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제출됨.

Ⅱ. 주요 사항의 검토

○ 금번 재위탁 대상 시설인 강남구립 압구정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로 2009년 개관 시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일체,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등 노인복지관 6대 사업, ▸기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이며, 위탁기간은 5년(2026. 5. 1. ~ 2031. 4. 30.)으로 제출됨.

-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1조 및 제21조의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근거에 따라 압구정노인복지관 운영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며,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부분 역시 관계 법령을 따른 것임.

○ 한편,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성과평가)에 따라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압구정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2025 8. 19. 관련 평가가 있었고 평가 결과 93.7점으로 기준 점수 75점 이상 ‘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참고로 압구정노인복지관 지도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 여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압구정노인복지관 지도점검 결과>

구분	지정분야	세부 지적내용	조치사항
2023	운영분야	2022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와 관련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법인 및 시설시스템, 지자체시스템, 복지넷, 워크넷, 사회복지시설시스템 중 2곳이상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복지시설시스템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나 사회복지시설시스템을 포함시키지 않음	권고
	회계분야	소방대피 훈련은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 반기별 진행하여야 하지만 종사자 참여 미흡함. 추후 훈련 시 종사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권고
2024	회계분야	2023년 1월 전기요금 납부 결과 확인 결과, 연체료 3,807원이 발생함.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자금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권고
2025	회계분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 2025년 예산에서 지출해야 하는 여비를 2024년 예산에서 선 지급	권고

(자료: 어르신복지과)

Ⅲ. 종합의견

○ 노인 인구 증가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 여가 복지에 대한 수요와 관심 또한 늘고 있는 현실임을 고려해 볼 때 지

역 내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은 노인복지 증진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어르신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걸맞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은 그 타당성은 인정된다 사료되며, 노인복지관이 지역사회 내 어르신 여가복지의 중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지역별, 기관별 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 지원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강남구립 압구정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끝.

「강남구립 압구정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648

제출년월일 : 2025. 11. 6.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어르신복지과

1. 제안이유

가. 관내 노인복지시설 중 압구정노인복지관 운영법인과의 협약기간 만료(2026. 4. 30.)에 따라, 압구정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함.

나.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강남구립 압구정노인복지관 관리 ·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 노인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의 요구

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의 특성과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대응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실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이 적합함.

- 운영 · 관리상의 효율성 제고

직영보다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인력·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사업수혜자 특성,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른 목표 설정과 객관적인 실적 평가 및 지도·점검을 통해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압구정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일체
- 노인복지관 6대 사업

  *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건강생활지원, 노년사회화교육,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 기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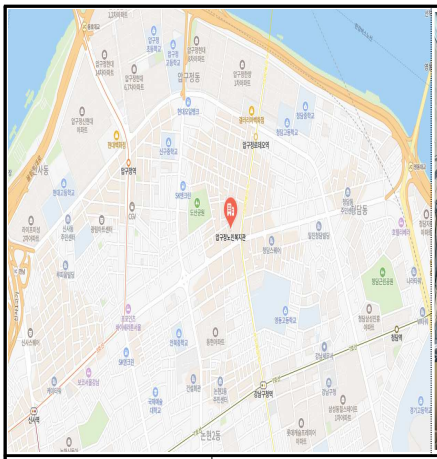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시설배치
압구정노인복지관	도산대로53길5	지하1층~지상4층 (792.92㎡)	프로그램실, 상담실, 식당, 사무실

○ 인력현황 : 12명(정규직 7명, 계약직 5명)

○ 이용대상 : 관내 60세이상 어르신(월 5,000명)

○ 위치도 및 현장사진

<table>
<tr><td colspan="2"></td></tr>
<tr><td>지역여건</td><td>- 고령층 비율이 높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 노인복지 수요가 높음
- 도산공원, 갤러리아백화점 등 여가·문화시설이 위치하여 어르신 생활 편의성이 우수함
- 강남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망 기관과 가까워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에 용이함</td></tr>
</table>

마. 민간위탁 기간 : 5년 (2026. 5. 1. ~ 2031. 4. 30.)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관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원가계산서)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산 출 근 거
지출원가	①인건비(노무비)	기 본 급	276,696,000	46.8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7] - 2025년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제수당 연장근무수당	26,990,820	4.6	
		제수당 야간근로수당	0	0	
		제수당 휴일근로수당	0	0	
		제수당 연차수당	0	0	
		제수당 명절휴가비	27,669,600	4.7	
		제수당 가족수당	4,200,000	0.7	
		제수당 정액급식비	10,920,000	1.8	
		제수당 관리자수당	2,400,000	0.4	
		상여금	0	0	-
		기타후생경비	2,500,000	0.4	- 2025년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퇴직충당금	29,073,050	4.9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12,149,530	2.1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6,052,930	2.7	
		보험료 고용보험료	5,238,320	0.9	
		보험료 산재보험료	2,433,290	0.4	
		보험료 장기요양보험	1,573,360	0.3	
		소 계	**417,896,900**	**70.7**	
	②운영비(경비)	여비(국내/국외)	1,440,000	0.2	- 2025년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교 육 훈 련 비	2,800,000	0.5	- 직접 소요비용 계상
		임 차 료	0	0	-
		우 편 통 신 비	1,772,000	0.3	- 직접 소요비용 계상
		유 인 물 비	0	0	-
		소 모 품 비	8,779,690	1.5	- 직접 소요비용 계상
		수 선 유 지 비	12,726,000	2.2	- 직접 소요비용 계상
		차 량 유 지 비	592,480	0.1	- 직접 소요비용 계상
		공공요금 및 제세	29,745,730	5.0	- 직접 소요비용 계상
		기 타 경 비	42,386,100	7.2	- 운영에 필요한 기타 비용
		소 계	**100,242,000**	**17**	
	③ 사 업 비		**72,932,000**	**12.3**	
지출원가 합계(Ⓐ=①+②+③)			**591,070,900**	**100**	
수입원가	④ 입장료·이용료		0	0	-
	⑤ 사용료		0	0	- 노인복지법 제54조에 의거 무상사용
	⑥ 기타수입		69,840,000	100	- 경로식당 식권판매 수익
수입원가 합계(Ⓑ=④+⑤+⑥)			**69,840,000**	**100**	
위탁비용(Ⓐ-Ⓑ)			**521,230,900**	**100**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 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여야 한다.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사회복지7급 정유진(☏ 3423-5906)

2025년도

강남구립 압구정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보충자료 -

어 르 신 복 지 과

비목별 기초계산서(압구정노인복지관)

1. 인건비 (노무비)

가. 기본급

(단위 : 원)

운영인력			근무기간		기준단가 (월 임금) ⓓ	소요금액 ⓔ=ⓒ×ⓓ
직 종	담당과업	종사인원 ⓐ	개월수 ⓑ	누계 ⓒ=ⓐ×ⓑ		
관장 (2급 23호봉)	압구정노인복지관 운영총괄	1	12	12	4,774,000	57,288,000
과장 (3급 15호봉)	압구정노인복지관 사업·총무업무 총괄 , 인사관리 등	1	12	12	3,783,000	45,396,000
총무팀장 (4급 12호봉)	총무기획팀 운영 전반, 강남구70+특화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등	1	12	12	3,226,000	38,712,000
복지팀장 (4급 8호봉)	정서지원사업,노인권익증진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강남복지재단 공모사업 등	1	12	12	2,902,000	34,824,000
사회복지사 (5급 8호봉)	평생교육지원사업 및 강남구70+특화사업, 강남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1	12	12	2,650,000	31,800,000
안전관리인 (관리직 15호봉)	시설관리 및 장비유지, 환경조성, 물품 구매 및 유지보수 등	1	12	12	3,055,000	36,660,000
사무원 (관리직 9호봉)	회계 및 사무업무 전반 등	1	12	12	2,668,000	32,016,000
계	-	7	-	-	23,058,000	276,696,000
운영인력 배치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 비정규직(5명) 인건비는 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으로 지급

나. 제수당

(1) 연장근무수당(단위 : 원)

직 종	연장근무사유	근무인원 ⓐ	근무기간			기준단가 (시간당) ⓔ	소요금액 ⓕ=ⓓ×ⓔ
			시간(1일당) ⓑ	근무일수 ⓒ	소계 ⓓ=ⓐ×ⓑ×ⓒ		
과장 (3급 15호봉)	업무처리	1	3	60	180	30,799	5,543,820
총무팀장 (4급 12호봉)	업무처리	1	3	60	180	26,402	4,752,360
복지팀장 (4급 8호봉)	업무처리	1	3	60	180	23,844	4,291,920
사회복지사 (5급 8호봉)	업무처리	1	3	60	180	21,855	3,933,900
안전관리인 (관리직 15호봉)	업무처리	1	3	60	180	25,052	4,509,360
사무원 (관리직 9호봉)	업무처리	1	3	60	180	21,997	3,959,460
계	-	6	18	360	1,080	-	26,990,820

* 기준단가(시간당) :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명절수당=월임금)×1/209×1.5

(2) 야간근무수당 : 해당 없음

(3) 휴일근무수당 : 해당 없음

(4) 연차수당 : 해당 없음

(5) 명절휴가비

직 종	지급대상 인원	지급횟수	기준단가	지급률(연간)	소요금액
관장(2급 23호봉)	1	2	2,864,400	기본급*60%*2회	5,728,800
과장(3급 15호봉)	1	2	2,269,800	기본급*60%*2회	4,539,600
총무팀장(4급 12호봉)	1	2	1,935,600	기본급*60%*2회	3,871,200
복지팀장(4급 8호봉)	1	2	1,741,200	기본급*60%*2회	3,482,400
사회복지사(5급 8호봉)	1	2	1,590,000	기본급*60%*2회	3,180,000
안전관리인(관리직 15호봉)	1	2	1,833,000	기본급*60%*2회	3,666,000
사무원(관리직 9호봉)	1	2	1,600,800	기본급*60%*2회	3,201,600
계	7	14	-	-	27,669,600

* 기준단가 : 기본급의 60%

(6) 가족수당

직 종	지급대상인원	지급횟수	기준단가	소요금액
관장(2급)	1(배우자)	12	40,000	480,000
	1(첫째자녀)	12	50,000	600,000
	1(둘째자녀)	12	80,000	960,000
	1(부양가족)	12	20,000	240,000
복지팀장(4급)	1(배우자)	12	40,000	480,000
사회복지사(5급)	1(배우자)	12	40,000	480,000
안전관리인(관리직)	1(배우자)	12	40,000	480,000
사무원(관리직)	1(배우자)	12	40,000	480,000
계	8	96	-	4,200,000

* 기준단가 : 배우자 - 월 40,000원 / 자녀 - 첫째 월 50,000원, 둘째 월 80,000원, 셋째 이후 월 120,000원 / 그 외 부양가족(직계존속, 형제자매) - 1명당 월 20,000원

(7) 정액급식비

직 종	지급대상 인원	지급횟수	기준단가	소요금액
관장(2급)	1	12	130,000	1,560,000
과장(3급)	1	12	130,000	1,560,000
총무팀장(4급)	1	12	130,000	1,560,000
복지팀장(4급)	1	12	130,000	1,560,000
사회복지사(5급)	1	12	130,000	1,560,000
안전관리인(관리직)	1	12	130,000	1,560,000
사무원(관리직)	1	12	130,000	1,560,000
계	7	84	-	10,920,000

* 기준단가 : 1인당 월 130,000원 고정

(8) 관리자수당

직 종	지급대상 인원	지급횟수	기준단가	소요금액
관장(2급)	1	12	200,000	2,400,000
계	1	12	-	2,400,000

* 기준단가 : 관장 대상 월 200,000원

다. 상여금 : 해당없음

라. 기타후생경비(복지포인트)

(단위 : 원)

직 종	지급대상 인원	지급횟수	기준단가	소요금액
관장(2급 23호봉)	1	1	400,000	400,000
과장(3급 15호봉)	1	1	400,000	400,000
총무팀장(4급 12호봉)	1	1	400,000	400,000
복지팀장(4급 8호봉)	1	1	300,000	300,000
사회복지사(5급 8호봉)	1	1	300,000	300,000
안전관리인(관리직 15호봉)	1	1	400,000	400,000
사무원(관리직 9호봉)	1	1	300,000	300,000
계	7	7	-	2,500,000

* 기준단가 : 2025년 기준 - 정규직원 종사자 10호봉 이상 연 400포인트, 10호봉 미만 300포인트

마. 퇴직충당금

(단위 : 원)

직 종	지급대상인원	월 기본노임	월 제수당	기준단가 (1인당)	소요금액
관장 (2급 23호봉)	1	4,774,000	997,400	5,771,400	5,771,400
과장 (3급 15호봉)	1	3,783,000	970,290	4,753,290	4,753,290
총무팀장 (4급 12호봉)	1	3,226,000	848,630	4,074,630	4,074,630
복지팀장 (4급 8호봉)	1	2,902,000	817,860	3,719,860	3,719,860
사회복지사 (5급 8호봉)	1	2,650,000	762,830	3,412,830	3,412,830
안전관리인 (관리직 15호봉)	1	3,055,000	851,280	3,906,280	3,906,280
사무원 (관리직 9호봉)	1	2,668,000	766,760	3,434,760	3,434,760
계	7	-	-	-	29,073,050

* 기준단가 : 개별 직원 연 보수 총액(기본급, 제수당)×1/12

바. 사회보험료

(단위 : 원)

구 분	산출기준 ⓐ	공시요율 ⓑ (사업주부담, 2026년 기준)	금 액 ⓒ=ⓐ×ⓑ
국민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본급+제수당+상여금+ 급여성 임금)	3.595%	12,149,530
국민연금보험료		4.75%	16,052,930
산재보험료		0,72%	2,433,290
고용보험료		1.55%	5,238,320
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12.95%	1,573,360
계	-		37,447,430

* 기준단가 : [개별 직원 급여+제수당(정액급식비 제외)]×공시요율 / 평균임금 총액= 337,956,420원

2. 운영비(경비)

가. 여 비

(1) 국내여비

(단위 : 원)

직 종	출장목적	출장인원 ⓐ	출장횟수 ⓑ	기준단가(1회당)		소요금액 ⓓ=ⓐ×ⓑ×ⓒ
				산출식	단가 ⓒ	
전직종	교육 및 연수 참석	6	48	5,000×6명×48회	5,000	1,440,000
계	-	6	48	-	-	1,440,000

* 기준단가는 1회당 숙박비, 일비, 식비, 운임비 등 산출하여 계상

(2) 국외여비 : 해당 없음

다. 교육훈련비(거래 가격조사 견적서)

(단위 : 원)

구 분 (교육명칭)	교육목적	횟수 ⓐ	인원 ⓑ	교육여비(1회당)		소요금액 ⓓ=ⓐ×ⓑ×ⓒ
				산출식	단가 ⓒ	
보수교육	직군별 보수교육을 통한 업무 역량 강화	1	7	28,000×1회×7명	28,000	196,000
법정의무교육	변화되는 법령 이해와 실무적용 - 산업안전보건교육	2	12	5,000×2회×12명	5,000	120,000
외부교육	중대재해교육	1	12	350,000×1회(1.5시간)	350,000	350,000
	인공지능 AI, 스마트워크 교육	1	5	60,000×1회×5명	60,000	300,000
	개인(직무별) 역량 강화 교육	1	1	35,000×1회×1명	35,000	35,000
		1	1	39,000×1회×1명	39,000	39,000
		1	2	50,000×1회×2명	50,000	100,000
		3	7	60,000×3회×7명	60,000	1,260,000
		1	4	70,000×1회×4명	70,000	280,000
		1	1	120,000×1회×1명	120,000	120,000
계	-	13	52	-	-	2,800,000

라. 임차료 : 해당 없음

마. 우편 통신비

(1) 우편료

(단위 : 원)

우편종류	발송목적	발송건수	기준단가 (1건당)	소요금액
국내등기(250g)	공무 등 원본 서류 발송	5	3,400	17,000
일반우편(250g)	감사 편지 등 우편물 발송	111	1,000	111,000
계	-	116	-	128,000

(2) 전화·통신료(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사용목적	사용수량			기준단가 (1건당)	소요금액
		통/월	월수	소계		
전화요금	이용 상담 전화	월 95,000	12	1,140,000	95,000	1,140,000
인터넷 사용	기관 업무 진행	월 42,000	12	504,000	42,000	504,000
계	-	-	-	-	-	1,644,000

바. 유인물비 : 해당 없음

사. 소모품비(피복비 등)　　※ 각종 견적서에 의거 산출

(단위 :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 출 가 격	
				조사1	조사2	조사3	최저단가	금 액
사무용품	복사용지 (A4, 2,500매)	개	60	23,000	25,190	27,300	23,000	1,380,000
	정부화일	개	30	3,550	3,600	4,700	3,550	106,500
	D링 바인더	개	118	3,500	4,200	4,500	3,500	413,000
	라벨지	개	12	19,900	25,860	27,960	19,900	238,800
	도장	개	7	6,600	7,000	11,000	6,600	46,200
	명함	개	1	22,500	24,000	30,000	22,500	22,500
	문서파쇄비	회	2	154,400	176,000	180,000	154,400	308,800
	소 계	-	230	-	-	-	-	2,515,800
소모성 집기	공기청정기 필터	개	12	51,000	55,900	58,500	51,000	612,000
	카드리지	개	6	121,000	169,000	174,000	121,000	726,000
	한컴오피스	개	9	30,690	35,000	102,300	30,690	276,210
	소 계	-	27	-	-	-	-	1,614,210
청소, 방역, 보수 용품	락스(2L) 및 세제	개	2	28,200	29,200	39,900	28,200	56,400
	물걸레대	개	6	22,000	29,800	44,800	22,000	132,000
	손걸레	개	27	530	550	900	530	14,310
	고무장갑	개	4	14,910	16,100	17,400	14,910	59,640
	분리수거용 봉투	개	21	2,750	2,900	2,900	2,750	57,750
	제설용품	개	3	21,000	23,900	24,000	21,000	63,000
	염화칼슘	개	4	18,800	21,290	31,680	18,800	75,200
	방역용품	개	2	24,900	36,900	78,000	24,900	49,800
	소 계	-	69	-	-	-	-	508,100
화장실 용품	점보롤화장지(재생용)	개	45	32,800	41,000	43,500	32,800	1,476,000
	핸드타올(재생용)	개	45	24,000	27,600	34,400	24,000	1,080,000
	거품비누	개	15	69,900	71,400	85,900	69,900	1,048,500
	방향제	개	12	38,000	38,500	39,000	38,000	456,000
	소 계	-	117	-	-	-	-	4,060,500
도서구입비	도서비	권	4	81,080	81,080	81,080	81,080	81,080
	소 계	-	4	-	-	-	-	81,080
합 계								8,779,690

아. 기타 경비　　※ 각종 견적서, 계약서, 고지서 등에 의거 산출

(단위 : 원)

구 분	항 목	산 출 내 역		기본단가 ⓑ	금 액 ⓒ=ⓐ×ⓑ
		산출식	수량 ⓐ		
수선 유지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275,000×2회	2	275,000	550,000
	냉·난방기 유지보수비	825,000×1회	1	825,000	825,000
	전기설비 보수	220,000×2회	2	220,000	440,000
	보일러, 온수탱크 유지보수비	150,000×3회	3	150,000	450,000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	513,240×1회	1	513,240	513,240
	소방시설 유지보수비	440,000×1회	1	440,000	440,000
	화장실(변기/세면대) 유지보수비	298,000×1회	1	298,000	298,000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201,300×12회	12	201,300	2,415,600
	정보보안(사이버가드)시스템 유지비	158,180×12회	12	158,180	1,898,160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88,000×12회	12	88,000	1,056,000
	엘리베이터 안전점검비	220,000×12회	12	220,000	2,640,000
	소방 종합점검, 작동점검	600,000×2회	2	600,000	1,200,000
	소 계	-	-	-	12,726,000
차량 유지비	차량 충전비	16,000×7회	7	16,000	112,000
	차량 소모품비	480,480×1회	1	480,480	480,480
	소 계	-	-	-	592,480
공공요금	전기요금	1,100,000×12회	12	1,100,000	13,200,000
	상하수도 요금	719,190×6회	6	719,190	4,315,140
	도시가스 요금	548,000×12회	12	548,000	6,576,000
	종량제 봉투	20,000×20개	20	20,000	400,000
	정화조 청소	508,920×1회	1	508,920	508,920
	소 계	-	-	-	25,000,060

제세 공과금	자동차보험료	361,510×1회	1	361,510	361,510
	신원보증보험료(직위식)	42,560×4명	4	42,560	170,240
	상해보험료(사회복지공제회)	10,000×12명	12	10,000	120,000
	화재 보험료	70,000×1회	1	70,000	70,000
	종합안전배상보험	834,800×1회	1	834,800	834,800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화물용)	12,200×1회	1	12,200	12,200
	도시가스납부 지급보증보험	52,880×1회	1	52,880	52,880
	자동차세	124,040×1회	1	124,040	124,040
	노인복지관 협회비	3,000,000×1회	1	3,000,000	3,000,000
	소 계	-	-	-	4,745,670
기 타 (경비)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300,000×12개월	12	300,000	3,600,000
	운영위원수당	80,000×5명×4회	4	400,000	1,600,000
	운영위원 회의경비	12,000×10명×4회	4	120,000	480,000
	식자재업체 선정 회의수당	80,000×6명×1회	1	480,000	480,000
	인사위원회 수당	80,000×2명×3회	3	160,000	480,000
	CMS 수수료	39,500×12개월	12	39,500	474,000
	퇴직연금 수수료	717,900×1회	1	717,900	717,900
	기장 대리 수수료	132,000×12회	12	132,000	1,584,000
	외부 회계 감사비	605,000×1회	1	605,000	605,000
	중대재해 위험성 평가	2,000,000×1회	1	2,000,000	2,000,000
	장비 관리료(복합기)	220,000×12개월	12	220,000	2,640,000
	장비 관리료(정수기)	51,900×12개월	12	51,900	622,800
	장비 관리료(비데)	10,900×8개×12개월	12	87,200	1,046,400
	비품구입(컴퓨터, 모니터, 의자)	5,000,000×1회	1	5,000,000	5,000,000
	특근매식비	9,000×6명×월 2회×12개월	24	54,000	1,296,000
	직원피복비	80,000×7명	7	80,000	560,000
	관내 청소용역비	1,600,000×12개월	12	1,600,000	19,200,000
	소 계	-	-	-	42,386,100
합 계					85,450,310

3. 사업비

(단위 : 원)

구 분	항 목	산 출 내 역	소요금액
정서지원 사업	회원 정보 안내용 문자충전비	200,000원×1회	200,000
	전문상담 강사료	100,000원×4회	400,000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연구비	2,500,000원×1회	2,500,000
	소 계		3,100,000
학습활동 지원사업 (노년 사회화 교육 사업경비)	인지발달 두뇌활성화 프로그램 강사료	40,000×6강좌×44회	10,560,000
		50,000×3강좌×44회	6,600,000
	교양교육 강사료	40,000×2강좌×44회	3,520,000
		50,000×2강좌×13회	1,300,000
		50,000×3강좌×44회	6,600,000
	건강증진 강사료	40,000×4강좌×44회	7,040,000
		50,000×1강좌×44회	2,200,000
	취미여가 강사료	40,000×1강좌×44회	1,760,000
		50,000×4강좌×44회	8,800,000
	평생교육 발표회 진행비	1,000,000×1회	1,000,000
	설날 행사 진행비	500,000원×1회	500,000
	상/하반기 문화체험	1,900,000×2회	3,800,000
	추석 행사 진행비	500,000원×1회	500,000
	노인의 날(걷기대회) 행사	1,700,000×1회	1,700,000
	지역사회 및 이용자 간담회 진행비	200,000×2회	400,000
	강사 간담회 진행비	75,000×2회	150,000
	동아리 간담회 진행비	50,000×2회	100,000
	강사·강의 만족도 평가(우수강사 포상)	100,000×4회	400,000
	동아리 운영비	100,000×1회	100,000
	바이네르 행사(강사비)	40,000×11회	440,000
	바이네르 행사(운영물품)	360,000×1회	360,000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827,300×1회	827,300
	학습활동 운영비(문자충전비)	300,000×3회	900,000
	소 계		59,557,300

구 분	항 목	산 출 내 역	소요금액
지역사회 조직사업	자원봉사자 중식비	4,500원×10명×12회	540,000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관리(문자충전비)	200,000원×1회	200,000
	옥외 현수막 제작비	35,400원×2회	70,800
	홍보 플랫폼 관리비(미리캔버스)	160,800원×1회	160,800
	홈페이지 도메인 연장	23,100원×1회	23,100
	소식지 제작비	2,400,000원×1회	2,400,000
	지역사회 캠페인 활동비	500,000원×1회	500,000
	클레이아트 진행비	110,000원×15회	1,650,000
	송년행사 진행비	15,000원×120명×1회	1,800,000
	소 계		7,344,700
노인권익 증진 사업	시니어 디지털 리더단 소양교육 강사료	150,000원×3회	450,000
	시니어 디지털 리더단 디지털 교육 강사료	40,000원×25회	1,000,000
	홍보 현수막	15,000원×1회	15,000
	시니어 인지 리더단 소양교육 강사료	150,000원×3회	450,000
	시니어 인지 리더단 인지 교육 강사료	40,000원×25회	1,000,000
	홍보 현수막	15,000원×1회	15,000
	소 계		2,930,000
합 계			**72,932,000**

4. 입장료·이용료 : 해당 없음

5. 사용료 : 노인복지법 제54조에 의거 무상사용

6. 기타수입

(단위 : 원)

항목		단가 (원)	수량 (월 인원)	기간 (월)	수입액(원)	비고
경로식당 식권 판매 수입	이용 어르신	2,000	2,100명	12	50,400,000	2025 어르신 급식제공사업 보조금 지원기준
	직원	4,500	360명	12	19,440,000	
계		-	2,460명	-	69,840,000	-